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8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 시작·중단 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7. ~ 6.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재입법예고(7. 10. ~ 7. 16.) 시행 중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제22조제7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6부터 제2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업무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역
2.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
3.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의8(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6호	100	250	500
--	--------------	-----	-----	-----

사. 법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100	25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생 략)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 <u>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u> <u>한국지식재산보호원</u> 3. (생 략) <u><신 설></u>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 <u>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u> <u>재산보호원”이라 한다)</u> 3.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2(조정부의 구성 및 운</u> <u>영)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u> <u>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u> <u>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u> <u>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u> <u>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u> <u>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u> <u>한다.</u>
제22조(조정절차 등) ① ~ ⑥ (생 략) ⑦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 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	제22조(조정절차 등)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생략)

<신설>

<신설>

-----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
한다.

1.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
을 위한 지원
2.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업무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
역
2.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
공
3.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
판 및 행사

<신 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
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
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
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의8(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
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
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154